

1999

수신 : 사회부 및 장애 담당 기자 (노동담당 기자)

발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 : 정세교육부 박옥순(전화 : 521 5364)

(표시 포함 4매)

## 보 도 자 료

###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기관 고발전 '각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즉각 항고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지난 8월 20일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0.00%) 6개 정부 기관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된 사건이 '각하'되자,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4월 노동부 통계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기관이 법률에 따른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했었다. 실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무총리 비서실 등 6개 기관에 나누어 실업 장애인 양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다. 특히 법률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 많은 장애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고발 후 3개월여만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각하' 통보만을 해온 것이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소장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 오길승 위원장(한신대 교수)은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기관 단체장들을 의법조치하도록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고발인 : 김정열(金正烈) 障碍友權益問題研究所長, 오길승(吳吉承)한신대 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위원장

피고발인 신념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 정해주는 국무조정실 실장, 조건호는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김진선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대성은 검찰청 총장, 김내원은 해양경찰청 청장.

첨부 : 항고장 1부

항 고 장

항고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화 : 02 521-5364)

서울 서초구 방배 1동 922 16

소장 : 김 정 일

항고인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전화 : 0339 370-670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직업위원회

경기도 송탄시 녹곡동 475 동부 A 104-503

교수 : 오 길 승

피항고인 1. 진 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 3

2. 정 해 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3. 조 건 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4. 김 진 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5. 김 태 정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730-1

6. 김 대 원

인천시 북구 북성동 1기 105

항고인은 위 피항고인들에 대한 직무유기죄 고발사건에 관하여 관청에서  
결정한 각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항고를  
제기하오니 다시 조사하여 피항고인들을 외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고 이 유

1. 고발인은 장애인의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장애인 단체이고,

피고발인 전념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

피고발인 정해주는 국무조정실 실장,

피고발인 조진포는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피고발인 김진선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피고발인 김태정은 검찰청 총장,

피고발인 김대위는 해양경찰청 청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현재 위 국가 기관의 지휘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얼마전 까지 일정기간 그 책임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위 국가기관의 인사 및 세번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시위에 있는 피고발인들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1항의 장애인 100분의 2 이상 고용의무규정과 제 2항의 장애인 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제반규정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했는데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위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보아됩니다.

중요한 국가 기관의 소속장은 제반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세 번 법률에 따른 장애인 고용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다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직무 유기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발인들의 위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의법 조치 되어야 하며 이것이 400만명의 장애인이 입은 고용상의 피해를 나소라도 만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피고인들은 피고발인들의 위 양과 같은 재직기간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직무유기 죄로 고발조치 하였는바, 이를 접수하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위 각하 결정은 고발인들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으  
로 상급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조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의뢰조치 하  
여 주시기 바라와 이번 항고를 제기합니다.

1999. 8. 20

항고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 정 열

전화번호 02-377-1111

계 항 고 장

항 고 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2-521-5364)

서울 서초구 방배 1동 922-16 (137-061)

소장 : 김정열

피고발인 1. 진        님 (주수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2. 성 해 주 (김영희)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06 정부 세종로 청사

3. 김 진 선 (배영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서울 고등검찰청장

귀중.



제 항 고 장

항고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화 : 02-521-5364)

서울 서초구 방배 1동 922-16

소장 : 김 정 열

항고인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전화 : 0339-370-670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직업위원회

경기도 송탄시 독곡동 475 동부 A 104-503

교수 : 오 길 승

피항고인 1. 진 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2. 정 해 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3. 김 진 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제항고인은 위 피항고인들에 대한 직무유기죄 고발사건에 관하여 관청에서 결정한 항고 기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항고를 제기하오니 다시 조사하여 피항고인들을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항 고 이 유

1. 고발인은 장애인의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장애인 단체이고,

피고발인 진념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

피고발인 성해주는 국무소성실 실장,

피고발인 김진선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일정기간 동안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제항고인들은 현재 위 국가 기관의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얼마 전까지 일정기간 그 책임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위 국가기관의 인사 및 제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들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1항의 장애인 100분의 2이상 고용의무규정과 제 2항의 장애인 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제반규정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했는데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위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중요한 국가 기관의 소속장은 제반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제반 법률에 따른 장애인 고용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다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직무 유기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발인들의 위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의법 조치 되어야 하며 이것이 400만명의 장애인이 입은 고용상의 피해를 다소라도 만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위 항과 같은 재직기간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여 수기를 바라면서 직무유기 죄로 고발조치 하였는바, 이를 접수한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34조 2항의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 34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동법 소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 고용 의무는 추상적 의무에 불과할 뿐 구체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없는 혐의 없

는 사안으로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3. 그러나 국가가 법을 제·개정하여 시행할 때는 구체적인 행위를 목표로 하는 바, 임의규정이라고 법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고, 더구나 법 이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 시행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바, 이에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합니다. 검찰의 항고 기각은 고발인들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조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의법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번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1999. 11. 8

항고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 정 열

항고인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오 길 승

서울고등검찰청장

귀중.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장애 담당 기자

발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화 02-521-5364 담당 : 박우순 정책부장 / cowalk.or.kr

# 보도자료

공시범 책

## 법률 해석에 검찰청 따로, 노동부 따로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관하여 -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2항의 ...노력해야 한다

**노동부는 "정부 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검찰청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력해야 한다'라는  
입의규정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의무가 면제됐다" 주장**

○ 지난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6개 정부 기관을 검찰에 고발한 후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8월 재차 항고장을 냈으나, 다시 검찰은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8일 "불기소처분청 감사의 불기소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  
비판은 이루어지지 않음

○ 검찰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에 의해 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관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이 아니라 보좌기관에 불과하므로 동법 소정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판결청 기각

○ 또한 검찰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2항의 "...노력해야 한다"라고 입의 규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고용의부는 추상적 의무에 불과할 뿐 구체적 행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은 범죄 혐의 없는 사안이라고 해석을 하며 항고 기각을 한 것이다.

↓  
재판부 / 국무총리 / 비서실장

5/220990002  
...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애초 취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6개 정부기관을 고발할 때, 노동부 자료(98년 6월 현재)에 따른 것이다. 즉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외거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 기관을 발표한 바, 노동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관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와 관련 공문서를 통해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제1항

○ 어쨌든 현재 장애인 고용 관련 부처인 노동부와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분명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해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해마다 그 자료를 내고 있으며, 이번 불 때 노동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판단한다. 이와 관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각 부처별로 법률 해석을 달리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8일 검찰의 항고기각에 대해 재항고를 할 예정이다.





## 사 실 과 이 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 피의자들은 각 국가기관의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라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고 시험실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지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위 각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0%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각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음

수사한 결과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렬 공무원(별표1의 1의 가항)과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직공무원(별표1의 2항) 및 별정직 공무원(별표1의 5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검찰총장은 검사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각 장애인고용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기관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이 아니라 보좌기관에 불과하므로 동법 소정의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은 동법 소정의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1998. 11. 12



살피건대 동법 제34조 제2항은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동법 제34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동법 소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고용  
의무는 추상적의무에 불과할 뿐 구체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은 범죄혐의 없는 사안임이 명백함

○ 각 각하

